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65
------------	------

2016. 11.3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제안이유

- 가.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는 쇠락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의 유통·판매·홍보지원,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17. 6월 개관 예정)중인 지역산업 거점시설로서,
- 나. 산업의 특수성과 운영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법인, 단체)을 통해 지역산업 및 시민(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 나. 위탁개요
 - 대상시설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1(면적: 1,653.0m²)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1,069.28m²(기존 화장실 69.54m² 포함)
 - 위탁기간 : 3년(2017.6~2020.5.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525백만원(2017년 기준)

다. 주요 위탁내용

- 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
- 자동차산업 지원 사무
 - 유통·판매 및 마케팅·홍보지원, 수출지원
 - 지역내 자동차산업 통합정보망 및 산업별 DB 구축·운영, 정보서비스 제공
 - 산업 및 직무분야 등 인력교육, 창업지원 등 지역재생 지원업무 수행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6.9.8)

마. 필요성

- 장안평 지역산업(자동차 매매, 정비, 부품 판매 및 재제조 등)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산업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유통·판매·홍보지원과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바. 기대효과

-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인력 및 비용 절감효과 제고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조성계획(' 15.9.23)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시의회 동의(' 15.12.3)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 16.8.4)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6.9.8)
- 2016년 제8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16.10.7)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 '16.8.4.)에 따라 설치되는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2016년 10월 31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장안평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등을 담은 실행계획으로(붙임1), 지역산업 현대화 및 재제조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자동차산업 복합단지 조성이 주요 내용이며,
-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유통·판매·홍보·마케팅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거점시설로 계획된 가운데, 센터를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이 동의안을 제출함.
 - 위탁기간은 3년이고(2017.6~2020.5.), 장안평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조직규모는 7명, 위탁비용은 연간 5억 2천5백만원('17.기준)을 산정함1).
 - 연간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2억 42백만원, 운영비 88백만원, 사업비 1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붙임2),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자동차산업 유통·판매·홍보·마케팅·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창업 지원 등임.
 - 참고로, 센터 건립은 구유지(무상사용)에 시비 29억원을 투입하여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임.

1) 연간 위탁금 예산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17년	525,364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도시환경정비(도시개발)/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 인건비 : 241,762천원/사업비 : 195,210천원 - 운영비 : 88,392천원
2018년	883,528	상동	- 인건비 : 279,226천원/사업비 : 455,080천원 - 운영비 : 149,222천원
2019년	910,034	상동	- 인건비 : 287,603천원/사업비 : 468,732천원 - 운영비 : 153,699천원
2020년	390,556	상동	- 인건비 : 123,429천원/사업비 : 201,165천원 - 운영비 : 65,962천원

- 센터는 자동차산업 시스템 현대화의 거점 시설이고 산업 시스템 현대화는 철저히 시장 중심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 직영보다는 자동차산업 특성·수요에 전문성과 민감성을 갖춘 민간의 전문 주체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장안평 자동차산업 선도사업으로 센터를 비롯해 재제조혁신센터²⁾가 계획되어 있고, 지역산업 지원 및 환경 개선 등 장안평 도시재생의 구심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센터와 재제조혁신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과 관계 등이 명료화될 필요가 있겠음(붙임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센터 일부를 사용하며 지역산업 지원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수탁기관 간의 위계와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양 센터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되 지역산업 지원에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의사결정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재제조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시유지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여 '18년 준공·운영할 계획이므로³⁾, 센터의 위탁업무 중 재제조 관련 사안은 재제조혁신센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제조혁신센터 운영전과 운영후로 해당 업무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위탁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해당 위탁기간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 수탁기관이 해당 기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장안평 자동차산업 현대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센터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한 만큼, 장안평 자동차산업에 애착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고, 최적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⁴⁾ 수탁기관 자격기준과 센터의 업무범위, 평가지침 등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동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2) 장안평에 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어의 수거 및 분류·분해, 제품 품질검사, 물류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기능이고, 시유지에 민간제안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16.2.(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가 제안서를 제출하여(11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이며, 재제조센터 운영 초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운영장비비 42억원) 받고자 협의 중에 있음.
(코어 : 사용된 제품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 및 조립군)

3) 시유지에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에서 BTL방식(민간이 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민간은 시설 무상사용(최대 20년))으로 추진 중임.

4)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산)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등의 단체의 참여(컨소시엄 가능)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65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는 쇠락한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의 유통·판매·홍보지원,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17. 6월 개관 예정)중인 지역산업 거점시설로서,
- 나. 산업의 특수성과 운영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법인, 단체)을 통해 지역산업 및 시민(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위탁개요

- 대상시설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1(면적: 1,653.0㎡)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1,069.28㎡(기존 화장실 69.54㎡ 포함)
- 위탁기간 : 3년(2017.6~2020.5.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안) : 연 525백만원(2017년 기준)

다. 주요 위탁내용

- 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
- 자동차산업 지원 사무
 - 유통·판매 및 마케팅·홍보지원, 수출지원
 - 지역내 자동차산업 통합정보망 및 산업별 DB 구축·운영, 정보서비스 제공
 - 산업 및 직무분야 등 인력교육, 창업지원 등 지역재생 지원업무 수행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6.9.8)

마. 필요성

- 장안평 지역산업(자동차 매매, 정비, 부품 판매 및 재제조 등)의 특수성을 감안, 지역산업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의 유통·판매·홍보지원과 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바. 기대효과

-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인력 및 비용 절감효과 제고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성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조성계획(' 15.9.23)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 시의회 동의(' 15.12.3)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 16.8.4)
-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6.9.8)
- 2016년 제8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16.10.7)

※ 작성자 : 도시활성화과 도시개발팀 조기석(☎2133-4641)